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7. 6. 8.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심의에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위치와 설치목적 등의 변경 문제로 보류되었다가, 2007. 7. 10. 교육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2007. 8. 17. 교육감의 제출로 2007. 8. 2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유아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평생학습관”을 설립하며, 「평생교육법」과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설치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교원 연수 및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새로이 설치함(안 제20조의 2)
- 나.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에 “중앙평생학습관”을 새로이 설치함(안 별표4)
- 다. “중계평생학습관”의 명칭을 “노원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안 별표4)
- 라.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 및 소관 업무를 조정함(안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 마. 「도서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도서관의 설치 목적 및 소관 업무를 조정함. (안 제35조 제1항 및 제37조)

4. 검토의견

□ 제안배경 및 사유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및 “중앙평생학습관”이라는 교육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소와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계획하였으나 예산관계로 지연되던 중 2007년 학생교육원이 축령산으로 이전함으로 설립계획이 부각되어 5곳의 설립지를 검토하던 중,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에 위치한 중곡초등학교의 건물을 새로이 증축하여 용마중학교를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저출산 및 주민이주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2008학년도에 27실, 2012학년도에는 38실의 유휴교실이 발생하여 이의 활용방안으로서 제안되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설립위치 변경요구로 사직동 학생교육원으로 설립위치를 수정하였음.
- “중앙평생학습관” 설립은 서울지역 평생학습관이 총 17개관(설립 4개관, 지정 13개관)으로 자치구수 대비 68%이고 인구 대비 1관당 봉사대상 인구가 577,000여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현재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은 센터로서 조직 및 시설이 매우 취약하므로 서울지역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총괄하는 전문적인 독립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검토의견

-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적 관심사항인 저출산 문제 해소와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임.

-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수 등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설립과정에서 유희교실의 활용문제와 연결되어 추진되었으며 그 위치의 적절성 문제로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논란이 분분하다가 재차 심의를 거쳐서 장소를 사직공원 내로 옮기는 수정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시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활성화 전담기구로 설립된다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등의 산하기관과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체험학습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유아들의 안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신설되는 “중앙평생학습관”은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의 자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적절하나,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민대학, 남산도서관 및 용산도서관 등과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앙평생학습관으로서 프로그램의 명백한 차별화가 요구됨.
- “중앙평생학습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센터로서의 각종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교육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이 모이면 결국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결국은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타 시·도에 비하여 부족한 평생학습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하나 현재의 평생학습관은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그 설립목적은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나, 강좌 프로그램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점 외에 운영상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중앙평생학습관”의 설립을 계기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평생학습관”과 “정보문화센터” 등의 설립은 관장직 등을 사서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
- “중앙평생학습관”의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핵심부서인 “평생학습지원과”와 “평생학습협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및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등의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협력과”에서는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센터로서의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정보 제공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평생교육을 연구하는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지원과에 1명 배치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홍보업무와 중첩되어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홍보 업무가 주업무가 될 가능성이 큼.
- 시도별 평생학습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평생학습관 비율이 현격히 낮다(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68%로서 가장 높은 대전 400%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고는 하지만 이러한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 시민대학,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등의 시설을 포함시켜 측정하여야 할 것임. 즉 서울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대체교육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5. 참고사항

- 관계법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2항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유아교육법」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평생교육법」

제13조 (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③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서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예산조치 :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